

대학원 학칙시행세칙

1999. 3. 26 제정

2013. 11. 20 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학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적용) 각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(이하 “세칙”이라 한다)을 적용한다.
- 제 3 조 (삭제 2001.4.25)
- 제 4 조 (수업) 대학원 및 각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예,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장 입 학

- 제 5 조 (입학지원서류) 학칙 제8조에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1. 입학지원서
 2. 진학추천서(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지원자에 한한다)
 3.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
 4. 출신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
 5. 연구계획서(통역번역대학원, 경영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)
(개정 2007.5.16)
 6. (삭제 2006.12.11)
 7. 기타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
- 제 6 조 (입학전형) ①각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전형은 3인 이상의 교수가 시행한다. 다만, 통역번역대학원 입학전형위원의 경우에는 교수 이외에 5년 이상 경력의 전문통·번역사를 포함할 수 있다. (단서신설 2013.2.25)
- ②입학지원 서류심사, 구술시험 및 면접 등의 성적배분비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- ③제2항의 구술시험 이외에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④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현장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. (신설)

2006.12.11)

제 7 조 (외국인 등의 입학전형) 학칙 제4조 제1항 단서 해당자에 대한 입학생 선발에서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학전형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 8 조 (입학허가)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.

제 3 장 등록, 휴학, 복학, 퇴학, 제적, 유급, 편입학 및 재입학 (개정 2007.5.16)

제 9 조 (등록의 종류) 각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규등록 : 수업년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
(개정 2001.4.25)

2. 입학등록·편입학등록·재입학등록 : 입학,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

3. 논문등록 :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

4. 연구등록 : 수료 후 논문세미나의 수강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

5. 연구생등록 :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

6. 교과목등록 :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 10 조 (휴학)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복학)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원을 등록 개시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 12 조 (퇴학)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 13 조 (제적) 학칙 제18조 제3호에서 “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”라 함은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.50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. 다만,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경우는 재학기간 중 유급 3회를 초과한 학생을 말한다. (단서신설 2007.5.16)

제 13 조의 2 (유급) ①통역번역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경우 유급시킬 수 있다. (개정 2009.11.27)

②유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개정 2009.11.27)

제 14 조 (편입학) ①편입학한 학생은 학칙 제21조가 정하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.

②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 또는 학과의 결정에 따라 소요학점의 일부를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교에서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.

③편입학한 학생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요학점(논문세미나 학점을 제외한다)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.

제 14 조의 2 (학위과정 변경) ①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1학기 이상 등록하고

6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자는 신청에 의하여 통합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전환 신청을 한 통합과정의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
④통합과정으로 전환한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기와 취득한 학점은 통합과정의 이수학과 취득학점에 포함된다.

⑤통합과정으로 전환과 전환된 통합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(본조신설 2012.12.31.)

제 15 조 (재입학) ①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학기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(개정 2000.10.13)

②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.

제 16 조 (재학년한 등) ①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된다.

②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, 퇴학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한다.

제 4 장 교과과정 및 수강신청 등

제 17 조 (각 대학원의 교과과정) 각 대학원 학생이 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. (개정 2013.11.20)

제 18 조 (개별과제연구) 대학원의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수의 연구계획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“개별과제연구”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은 6학점 이내,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전공학점에 포함한다. (개정 2006.1.19)

제 19 조 (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) ①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②각 대학원장은 매 4년마다 교과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.

③각 대학원 각 학부 또는 학과는 수강생이 3인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매 학기 12개까지 개설할 수 있다.

④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과 다르게 시행할 수 있다.

제 20 조 (보충과목) ①각 대학원 각 과정에서 학과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학생에 대하여 제1학기 수강신청전에 3학점 이상의 보충과목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.

1. 하위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의 상위학위과정에 입학하는 학생
2. 기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

②보충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는 학칙 제22조에 의한 학기당 취득학점 외에 3학점(교육대학원 4학점)까지 더 취득하게 할 수 있다. (개정 2012.12.31.)

제 21 조 (논문세미나의 수강) ①각 대학원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과목인 “논문세미나”를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.

②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. 다만, 박사학위과정 최초의 논문세미나는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.

③논문세미나에 대하여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(개정 2011.8.30.)

제 22 조 (논문지도 학생수의 제한)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각 대학원별로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석사학위과정은 동일학기에 5인 이내,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23 조 (수강 신청, 변경 및 철회) 각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내에, 변경은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, 철회는 학기말시험 시작 전에 할 수 있다.

제 24 조 (교과목 담당교수) 교과목의 강의, 실기 및 실습을 담당하는 “교과목 담당교수”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임교원
2. 기타 각 대학(원)장이 인정한 자

제 25 조 (담당교과목수의 제한) 교과목 담당교수는 한 학기에 2과목(개별과제연구 및 논문세미나를 제외한다)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6 조 (학사학위과정의 수강교과목) 학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4학년 학사학위 과정의 교과목은 4학년(건축학전공 4, 5학년) 개설교과목으로 한다. (개정 2012.12.31.)

제 27 조 (국내외 연수) ①학칙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연수의 연수생 선발 방법, 연수내용, 기간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정한다.

(개정 2002.6.19)

②(삭제 2002.6.19)

제 5 장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(개정 2002.2.14)

제 1 절 재학 중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·학과에서
취득한 학점의 인정 (개정 2002.2.14)

제 28 조 (3대학원의 학점교환) ①대학원과 서강대학교대학원 및 연세대학교대학원 간에 체결된 “3대학원 학점교환제”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한 학점과 통산하여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에 필요한 범위의 2분의 1까지 학칙 제21조의 규정이 정하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6.1.19)

②학과주임교수는 매 학기 개강 이전에 다른 두 대학원과 학점교환 교과목을 협의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, 그 결과를 각 대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학점교환 교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교과목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④학점교환 교과목은 매 학기 6학점까지, 통산하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수강할 수 있다. (개정 2005.2.11)

⑤3대학원 학점교환 교과목의 성적은 학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(개정 2005.2.11)

제 29 조 (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과의 학점교환) ①각 대학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의 다른 학교 대학원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학점교환을 시행할 수 있으며,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04.1.20)

②학·군 제휴 과정학생이 그 제휴에 참여한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31조 제1항에 의한 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재적대학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. (개정 2002.2.14)

제 30 조 (각 대학원·학과간의 학점인정) ①대학원 및 각 전문대학원 학생은 각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,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양 대학원 및 소속 대학원 타 학과(또는 학부)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
②각 특수대학원 학생은 각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12학점 이내에서 소속 대학원의 타 전공 또는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 (개정 2000.10.13)

제 30 조의 2 (학점인정) 각 대학원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소속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복수학위 이수자의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.

(본조신설 2004.1.20)

제 2 절 입학 전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

(개정 2002.2.14)

제 31 조 (학점이전) ①입학 전에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내에서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. (개정

2010.10.11)

②제1항의 학점이전은 각 대학원의 해당 학부·학과 또는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_ 이상인 것에 한한다. (개정 2002.2.14)

③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후 제1학기 말 이전에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32 조 (수업년한)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이전이 인정된 학생의 수업년한은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3 절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

제 33 조 (학사학위과정 학점의 이전) ①학칙 제25조 제1항에 의한 학점이전은 그 성적이 B_ 이상인 것에 한하여 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후 제1학기 말 이전에 학과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34 조 (수업년한)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의 이전이 승인된 학생의 수업년한은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6 장 논문지도

제 35 조 (논문지도교수) ①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학생의 제3학기 말 이전에, 박사학위과정은 학생의 제1학기 말 이전에 정한다.

②각 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주임교수가 위촉한다.

제 36 조 (논문지도교수의 자격) 각 대학원 각 과정의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제24조를 준용한다.

제 7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등

제 1 절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

제 37 조 (외국어시험) ①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되, 영어 이외에 중국어, 불어, 독일어, 한문 기타 외국어 가운데 하나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. (개정 2002.2.14)

②영어시험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 대한 성적으로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학부·학과별로 합격여부를 사정한다. 다만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어시험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2.2.14)

③영어를 제외한 외국어시험의 방법 및 사정기준은 학부·학과에서 정하되, 대학원위원

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(신설 2002.2.14)

④학생은 어학능력시험 등 외국어시험 성적을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까지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8 조 (종합시험) ①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,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.

②각 대학원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,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,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7조의4에 의한 학·석사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, 소정의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다만, 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(개정 2013.2.25)

③제2항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원칙으로 하되,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 (신설 2001.4.25)

④종합시험의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한다. (개정 2001.4.25)

제 2 절 통합과정 자격시험

제 39 조 (응시자격 및 시험시기) ①통합과정으로 입학하거나 전환한 학생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학기까지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(개정 2012.12.31.)

②(삭제 2001.4.25)

제 40 조 (시험방법) 학과주임교수는 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 교과목성적 등의 사정기준을 학과교수회를 거쳐 확정·시행한다.

제 41 조 (불합격자의 석사학위 수여)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학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 3 절 응시신청 및 출제

제 42 조 (응시신청)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응시료와 함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43 조 (출제)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.

제 8 장 학위청구논문

제 1 절 논문의 체제와 제출절차

제 44 조 (논문의 체제) ① 학위 청구논문의 표제지 등 체제는 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 청구논문 체제”에 따르되, 본문과 참고문헌은 전공학문분야별 전문학술지의 편집 체제에 따른다.

② 학위 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영어·불어·독일어·중국어의 4개 국어 중 하나로 쓴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문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 45 조 (학위 청구논문의 제출) 논문제출자는 심사료를 납부하고,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 청구논문을 심사일 1주일 전까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6 조 (논문제출년한) 제16조의 규정 중 재학년한의 규정은 논문제출년한에 준용한다.

제 2 절 논문의 심사

제 47 조 (논문심사위원)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4조를 준용한다.

②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으며,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. (신설 2010.12.6)

③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.

제 48 조 (논문의 심사) ①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한다.

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합하여 1회를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구술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.

③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
제 49 조 (심사결과 보고) 심사위원장은 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0 조 (심사위원회의 회의정족수) 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는 2인 이상, 박사학위는 4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.

제 51 조 (논문의 합격판정) ① 각 대학원 학위논문은 “합격(P)” 또는 “불합격(F)”으로 사정한다.

②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,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합격으로 판정한다. (개정 2000.10.13)

제 52 조 (합격된 논문의 제출) ① 각 학위과정에서 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생은 논문을 정해진 기일내에 각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1.9.24)

②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제 53 조 (박사학위논문의 발표) 박사학위논문의 주요내용은 국제 또는 전국수준의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.

제 9 장 학위수여

제 54 조 (학위기) 석사학위·박사학위·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각각 총장이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. (개정 2009.2.23)

제 10 장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·연·산 협동과정

제 55 조 (협동과정의 운영) ①학과간 또는 학·연·산 협동과정에는 각각 주임교수와 운영위원회를 두며,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②학·연·산 협동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원 학칙 및 이 세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교과목 수강은 각 대학원에서 하고 실험실습 및 연구는 각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할 수 있다.

제 11 장 보칙

제 56 조 (시행규칙)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1999. 3. 26 제정)

- ①(시행일)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규정)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학칙시행세칙, 국제대학원 학칙시행세칙, 통역대학원학칙시행세칙, 교육대학원학칙시행세칙, 디자인대학원학칙시행세칙, 사회복지대학원학칙시행세칙, 정보과학대학원학칙시행세칙, 신학대학원학칙시행세칙, 정책과학대학원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.
- ③(경과조치) 1. 이 세칙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구 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세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.
2. 국제대학원에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, 사회복지대학원에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대학원의 세칙을 적용한다.

부 칙(2000. 3. 7 전문개정)

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0. 10. 13 개정)

대학원 학칙시행세칙

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4. 25 개정)

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9. 24 개정)

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2. 14 개정)

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6. 19 개정)

이 세칙은 200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2. 7 개정)

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8. 12 개정)

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10 개정)

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1. 20 개정)

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2. 10 개정)

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12. 22 개정)

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2. 11 개정)

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. 19 개정)

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2. 11 개정)

이 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제6호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2. 7 개정)

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5. 16 개정)

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2. 29 개정)

①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17조 [별표 1] 중 경영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은 구 학칙 시행 당시 경영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게도 적용한다.

부 칙(2009. 2. 23 개정)

이 세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5. 26 개정)

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11. 27 개정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10. 11 개정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①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1조 제1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[별표 1] 중 경영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은 구 세칙 시행 당시 경영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게도 적용하며, [별표 2] 중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은 구 세칙 시행 당시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게도 적용한다.

부 칙(2010. 12. 6 개정)

대학원 학칙시행세칙

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10년 9월 1일 현재 논문 심사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(2011. 3. 21 개정)

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8. 30 개정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는 2012년 3월 1일부터, 제21조 및 제38조제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2. 29 개정)

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7. 4 개정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31 개정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의2 및 제39조제1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2. 25 개정)

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1. 20 개정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 별표 1의 경영전문대학원은 2013년 9월 1일부터, 공연예술대학원 및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 (제17조 관련)

(개정 2013.11.20)

1.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

구 분	석사과정	박사과정
대 학 원	가. 전공과목 : 24학점 나. 보충과목 다. 논문세미나	가. 전공과목 : 60학점(석사학위과정 27학점까지 인정) 나. 보충과목 다. 논문세미나
국 제 대 학 원	국제학과 가. 공통필수과목 : 3학점 나. 전공과목 : 30학점(9학점까지 장기 인턴십 가능) 다. 전문분야실습 : 5학점 라. 보충과목 마. 논문세미나(3학점) 또는 3학점 추가 취득 한국학과 가. 전공과목 : 33학점 나. 보충과목 다. 논문세미나(3학점) 또는 3학점 추가 취득	가. 전공과목 : 60학점(석사학위과정 24학점까지 인정) 나. 보충과목 다. 논문세미나
통역번역 대 학 원	가. 전공과목 : 44학점 나. 보충과목	가. 전공과목 : 60학점(석사학위과정 27학점까지 인정) 나. 보충과목 다. 논문세미나
경영 전문대학원	가. 전공필수과목 : 21~39학점 나. 전공선택과목 : 6~24학점	
의학 전문대학원	· 전공과목 : 181학점	
법학 전문대학원	가. 전공필수과목 : 32학점 나. 전공선택과목 : 58학점 이상	가. 전공과목 : 24학점 나. 논문세미나 : 6학점

*보충과목은 해당학생에 한함

2. 특수대학원

구 분	일반 교과목	논문세미나 등
교육대학원	가. 교직과목 : 6학점 나. 전공필수과목 : 6~9학점 다. 전공선택과목 : 12~21학점 라. 보충과목	논문세미나 : 3학점
디자인대학원	가. 공통과목 : 6학점 나. 전공과목 : 24학점 다. 보충과목	논문세미나
사회복지대학원	가. 공통과목 : 12학점 나. 전공과목 : 12학점 다. 보충과목	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 취득
신학대학원	가. 전공과목 : 33학점 나. 보충과목	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 취득
정책과학대학원	가. 공통과목 : 3학점 이상 나. 전공과목 : 12학점 이상 다. 보충과목	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 취득
공연예술대학원	가. 공통필수과목 : 3학점 나. 전공필수과목 : 6학점 다. 전공선택과목 : 21학점 라. 보충과목	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 취득 또는 렉처리사이틀
임상보건과학대학원	가. 공통과목: 6학점 이상 나. 전공과목: 12학점 이상 다. 보충과목	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 취득
임상치의학대학원	임상치의학과 가. 공통과목: 3학점 나. 전공필수과목: 12학점 다. 전공선택과목: 9학점 라. 전공임상실습: 6학점 임상구강보건학과 가. 공통과목: 12학점 나. 전공과목: 8학점 다. 임상실습: 6학점	논문세미나 또는 6학점 추가 취득
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	TESOL학과 / 한국어교육학과 가. 필수과목 : 9학점 나. 선택과목 : 24학점 다. 선택필수과목 : 3학점 국제중국어교육학과 가. 필수과목: 9학점 나. 선택과목 ·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는 경우 : 24학점 ·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경우 : 27학점	TESOL학과 / 한국어교육학과 · 포트폴리오 국제중국어교육학과 · 포트폴리오 또는 논문세미나

*보충과목은 해당학생에 한함

(서식 제1호)

(개정 2009.2.23)

학 위 기

성 명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교 (○○)대학원에서 ○○학과 석사학위
(○○학 부전공)
과정을 이수하고 ○○학 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.

년 월 일

이화여자대학교 (○○)대학원장 학위 ○ ○ ○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○○학 석사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학위 ○ ○ ○ (인)

학위번호: 이화여대 ○○○○ 석 ○○○○ (○○) 석 제 호

학 위 기

성 명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교 (○○)대학원에서 ○○학과 박사학위과정을
(○○학 부전공)
이수하고 ○○학 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.

년 월 일

이화여자대학교 (○○)대학원장 학위 ○ ○ ○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○○학 박사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학위 ○ ○ ○ (인)

학위번호: 이화여대 ○○○○ 박 ○○○○ (○○) 박 제 호

(서식 제3호)

(개정 2009.2.23)

학 위 기

성 명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교 (○○)대학원에서 ○○학과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을
(○○학 부전공)
이수하고 ○○학 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.

년 월 일

이화여자대학교 (○○)대학원장 학위 ○ ○ ○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○○학 박사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학위 ○ ○ ○ (인)

학위번호: 이화여대 ○○○○ 박 ○○○○ (○○) 박 제 호

명박 제 호

학 위 기

(국적)

성 명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함으로써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(인류문화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으므로)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○○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.

년 월 일

이화여자대학교 (○○)대학원장 학위 ○ ○ ○ (인)

위 추천에 의하여 명예 ○○학 박사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학위 ○ ○ ○ (인)

* 외국인에게 대하여는 한글로 작성된 학위기를 수여하되, 영어로 작성된 학위기도 같이 수여한다.